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11. 22.(일)

# 감액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 2026.11.22. 조선일보는 「상법 빈틈 파고든 4대 금융…'세금 0원' 배당」 기사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에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은 배당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해 놨다. 하지만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큰 감세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걷어야 할 수천억 원대의 배당 세수가 사라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면서, "정치권과 세무 당국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세무 당국 역시 비과세 배당 확산이 세수에 미칠 파장과 남용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혜택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입장>

□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을 받는 주주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므로,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큰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❶상장법인의 대주주, ❷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25.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에 대해 '26.1.1.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참고) 대주주 등에 대한 감액배당 과세방식(소득세법 시행령 §26의3⑥)

ㅇ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ㅇ (주식 취득가액 이하의 감액배당) 감액배당 금액만큼 주식 취득가액을 감액*

* 취득가액을 감액한 만큼 추후 양도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ㅇ 감액배당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개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주주를 '대주주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또한, 대주주 등에 대한 감액배당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제실<br>금융세제과 | 책임자 | 과 장 | 박은영 (044-215-4230) |
|---|---|---|---|---|
| | | 담당자 | 사무관 | 남원우 (namwonwoo@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